

2023년도 1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3. 4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3. 1. 1. ~ 3. 31.(2023년 1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

접수결과

- 2023년 1분기 총 44건 접수

[표 1] 2023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	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 익 제 보	공직자비리신고	16	6	6	4
지 원 센 터	공 익 신 고	28	3	12	13
국민권익 위 원 회	국 민 신 문 고	0	-	-	-
합	계	44	9	18	17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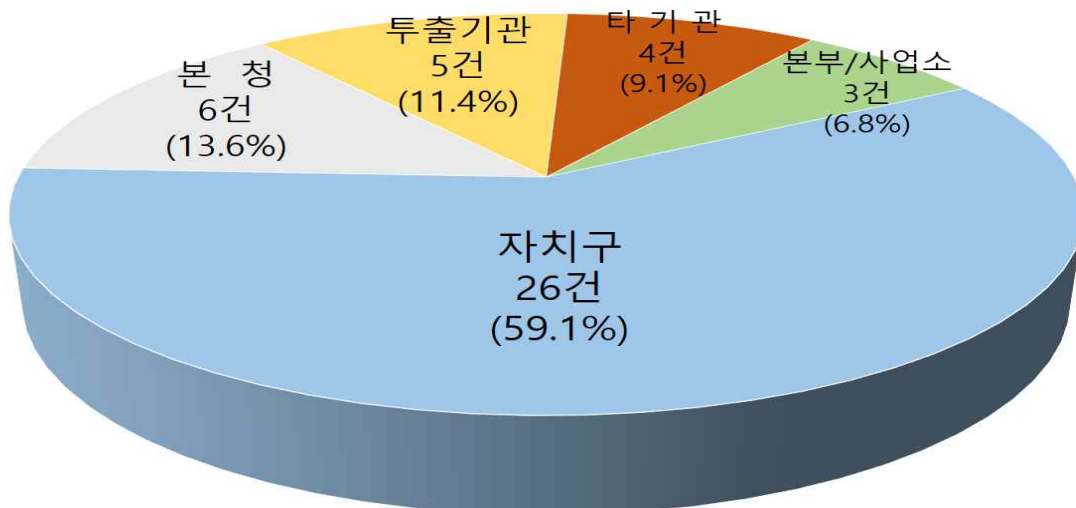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공익제보지원센터		국민권익위원회
		온 라 인 PC/모바일	오프라인 우편/방문/팩스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/이첩
접수건수	44 (100%)	44 (100%)	-	-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6건(59.1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공중위생관리법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16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8건
 - 기타 일반민원 등 2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6건(13.6%), 본부/사업소 소관 3건(6.8%)
 - 본청의 경우 부패신고 5건, 공익신고 1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2건, 부패신고 1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5건(11.4%), 타기관 4건(9.1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4건
 - 타기관 4건은 국가기관 등 소관 민원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44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40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40건(90.9%)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44 (100%)	19 (43.2%)	21 (47.7%)	4 (9.1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<p>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p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40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19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업 무 부 적 정	본 청	5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 부 / 사 업 소	-	
	투 자 출 연 기 관	2	
	자 치 구	7	
	타 기 관	1	
	소 계	15	
복 무	본 청	-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 부 / 사 업 소	1	
	투 자 출 연 기 관	2	
	자 치 구	1	
	타 기 관	-	
	소 계	4	
총 계		19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21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건 축 법	1	투 출	해당없음	부실자재 납품
공중위생관리법	1	자 치 구	철거명령 등	신고 없는 위생시설 설치
남녀고용평등법	1	타 기 관	신고안내	민간기업 법 위반 관련
도 시 정 비 법	2	자 치 구 2	진행중2	재개발 조합 관련
소 방 시 설 법	1	본 청	진행중	건물의 관련법 위반 의심
옥 외 광 고 물 법	1	자 치 구	전단지 수거	불법 전단지 부착
유 · 도 선 법	1	본부/사업소	행정지도	선박 매연 관련
의 료 법	9	자 치 구 9	행정지도1, 해당없음1 진행중6, 취하1	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심
주 택 법	1	자 치 구	진행중	공동주택 관련
청 원 경 찰 법	1	본부/사업소	진행중	청원경찰 복무 관련
폐 기 물 관 리 법	2	자 치 구 1	해당없음1, 진행중1	폐기물 무단투기 의심
총 계	21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3. 3. 31.기준)

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(5)		종결(10)				진행중	취하
	처분 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 (직접제보안내)	중복 등 (중기불충분, 보완요구 등)	중지 (수사중)		
44	1	4	5	2	3	-	24	5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연번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공 익	신고 없는 위생시설 설치	자 치 구	철거명령, 행정지도